

『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기존에 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들을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의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별표)
-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」은,

- 「구미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관련 시설 안전거리 고시」 및 「구미시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」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들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에 의거하여 고압가스 제조사업 및 저장소가 ‘독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’에는 공업지역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